

제 367호

1973. 5. 1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소

전화 75-6444·6090

# 시보

차 례

영구보통주택에 관한 규정  
및 임대료에 관한 규정

◎ 조례	제 766호	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	3
	제 767호	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 징수조례	5
◎ 고시	제 64호	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인가 일부변경	5
◎ 공고	제 85호	서울특별시주거구역지정	6
◎ 사령			7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 
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
1973년 4월 30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766 호

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 
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 1 조중 "점용료" 다음에 "등의"  
를 삽입한다.

별표 1의 2

입장료 및 사용료(어린이대공원)
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4 조 ( 입장료 및 사용료 ) 시장은  
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  
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의한 입장  
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  
다만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  
료는 별표 1의 2에 의한다.

제 7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 
한다. 다만 어린이대공원의 사용  
료는 별표 4에 의한다.

별표 1의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  
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3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종 별	구 분	금 액	비 고
입 장 료	개 인	100 원 50 원	1 회에 대하여 아동원 6세 - 13세이내를 말함. 단체는 30 인이상을 말함.
	단 체	70 원 30 원	
어 린 이 풀 장 사 용 료	대 인	300 원	
	아 동	200 원	
주 차 장	버 스	시간 당 50 원	60 분이내 주차는 1 시간으로 계산함.
	승 용 차	" 30 원	
	2 륜 차	" 20 원	
꼬마자동차놀이		30 원	1 회에 대하여, 1 회는 10 분이내로함.
유 모 차 사 용		100 원	1 회에 대하여

별표 4

비공원관리청의사용료 (어린이대공원)

종 별	구 분	금 액	비 고
놀이동산	대인 아동	50 원이내 30 "	1 회에대하여. 아동은 4 세 ~ 14 세 이내로함.
하늘차	대인 아동	100 " 50 "	" "
청룡열차	대인 아동	100 " 50 "	" "
미니레일	대인 아동	100 " 50 "	" "
번개차	대인 아동	100 " 50 "	" "
두꺼비차	대인 아동	100 " 50 "	" "
아기차	아동	30 "	"
포마기차	대인 아동	60 " 30 "	" "
팽이놀이	대인 아동	60 " 30 "	" "
바즈카포	대인 아동	60 " 30 "	" "
달로켓트		무 료	
회전컵		"	
풍자놀이		"	
회전그네		"	
요술집			

국무총리의승인을 얻어제정한 서울특별시  
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징수조  
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
1973년 4월 30일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767 호

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표  
교부수수료징수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도로운송  
차량법 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 23조  
의규정에의하여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  
장"이라한다)이 자동차등록번호표의  
교부를대 형함에 있어동법 제 25조  
제 1항의 규정에의한 교부수수료 (이하  
"수수료"라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 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
한다.

제 2조 (수수료액) ①수수료는 시장이  
법제 25 조제 1항의 규정에의하여 결  
정된 금액을 번호표의교부를 신청하  
는자로부터 징수한다.

②시장은 전항의 수수료액이 결정되  
었을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.  
이를 변경한때에도 또한같다.

제3 조 (징수) 수수료는 번호표의 교  
부신청시에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 
의하여 징수한다.

제 4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 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

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04호

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설및  
실시계획인가일부변경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21호 (68.3.20)  
로 실시계획인가된 영등포구 화곡동  
51의 16 필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
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및  
제 13조의 규정에의한 시설 및 지적  
승인변경과 동법제 25조의 규정에  
의한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였기  
건설부 고시제 123호 (73.4.4)에  
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 
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

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73년 4. 28 일

서울특별시

가.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 변경

구분	사업명	위치	면적	비고
기정	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	시내영등포구화곡동 51외 16필	69,640 평	
변경	"	"	67,686 평	공사불능지 1954명제척

나. 아 동 공 원

명칭	위치	면적	비고
화곡제 1 아 동 공 원	시내영등포구화곡동산 41-2 928	(281 평)	도면상에만 고시된
화곡제 2 아 동 공 원	" 화곡동산 29 842	(255 평)	시설을 금반고시
화곡제 3 아 동 공 원	" 화곡동산 28-1 944	(286 평)	합

다. 시 설 녹 지

명칭	위치	면적	비고
화곡시 설 녹 지	시내영등포구화곡동산 41-2	5884미터	도면상에만 고시된 시설을금반고시함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85 호

서울특별시주거구역지정

서울특별시 주거지역중 주거구역지정을 건축법 제 39 조 제 1 항 제 3 호의

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.  
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건축과 및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3. 4.

서울특별시

주 거 구 역 지 정 조 서				
구 분	구 역 별	주거지역면적	주 거 지 역 중 주 거 구 역 면 적	금 회 지 정 면 적
9	영등포구역	77.42 km <sup>2</sup>	53.03 km <sup>2</sup>	신도림동지내 2.00/km <sup>2</sup>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위 지정된 주거구역안에서 공지 비율은 10분의 6 이내임.   | 규정에 따른다.  |
| 2. 주거구역이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지구에 적용될 때에는 동법 제한 | 3. 주거구역중 추후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시는 주거구역 적용을 재계한다. |

사 령

© 1973.4.28.

성 명	부 서	직 급	발 령 사 항
김 지 령	소 방 본 부	조건부지방소방원	
석 기 홍	"	"	
김 대 석	"	"	
이 재 유	"	"	
이 재 욱	"	"	
정 계 천	"	"	
김 광 수	"	"	
심 정 수	"	"	
이 봉 회	"	"	
노 병 숙	"	"	
홍 영 식	"	"	
박 영 득	"	"	
위 용 환	"	"	
이 경 우	"	"	
박 황	"	"	
정 개 명	"	"	

성명	부서	직급	발령사항
홍일성	소방본부	조건부지방소방원	
안분규	"	"	
이창열	"	"	
우세곤	"	"	
임종준	"	"	
김시봉	"	"	
구본관	"	"	
정우권	"	"	
이원섭	"	"	
유영섭	"	"	
이재상	"	"	
김홍권	"	"	
신영균	"	"	
오인준	"	"	
이종욱	"	"	
양승종	"	"	
박찬영	"	"	
이상기	"	"	
강종술	"	"	
김병분	"	"	
남승용	"	"	
유명열	"	"	
유재순	"	"	
우종섭	"	"	
박상수	"	"	
김기환	"	"	

<p>경 북 지방행정주사 황 진 식</p> <p>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</p> <p>지방행정주사에 임함.</p> <p>구호봉을 급함.</p> <p>중로구 근무를 명함.</p>	<p>◎ 1973.4.30.</p> <p>성북구(2.28 한파견중) 지방행정주사보 유 시 영</p> <p>중구파견 근무를 명함.</p> <p>성북구(2.28 한파견중) 지방행정주사보 이 주 원</p> <p>중구파견 근무를 명함.</p>
<p>서 . 울 특 별 시 장</p>	
Empty space for content	